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38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 박해철 • 전용기 • 박지원

이재강 • 박정현 • 최민희

박용갑 • 이수진 • 추미애

허성무 • 이병진 • 송옥주

김정호 · 이용우 · 이용선

김성환 · 이학영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로사용된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판단 정표로서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 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정표에서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 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
	성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
	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
	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
	액을 말한다.
<u>6</u> . ~ <u>9</u> . (생 략)	<u>7</u> . ∼ <u>10</u> . (현행 제6호부터 제9호
	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